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21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2174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3 선고 2013가단1982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화원새마을금고

변론 종결2015. 4. 30.

판결 선고2015. 6. 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3. 선고 2013가단1982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 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8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화원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87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8727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 정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이 C와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로, 제4면 제4행의 '원고의 피고 B의'를 '원고와 피고 B의'로, 제4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C 등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거나(민법 제125조), C와 D가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민법 제126조)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별지